

# 직 제 규 정

[제정 2009. 5. 29]  
 [개정 2010. 4. 30]  
 [개정 2011. 1. 27]  
 [개정 2011. 2. 24]  
 [개정 2011. 11. 24]  
 [개정 2012. 2. 28]  
 [개정 2013. 2. 27]  
 [전부개정 2013. 8. 30]  
 [개정 2013. 10. 1]  
 [개정 2013. 10. 29]  
 [개정 2014. 2. 28]  
 [개정 2014. 5. 22]  
 [개정 2015. 1. 30]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진흥원의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직위”라 함은 진흥원 직제에 의하여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를 말한다.
2. “직무”라 함은 각 직위가 분장하는 개별적인 책임업무를 말한다.
3. “직무권한”이라 함은 각 직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.
4. “직급”이란 진흥원내에서 직원의 신분과 처우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직명”이란 진흥원내 직급명칭을 말하는 것이다.

## 제2장 조 직

**제4조(조직)** 진흥원의 조직은 <별표 1>과 같다.

**제5조(원장)** ① 원장은 정관에 따라 진흥원을 대표하며,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원장이 휴가, 국내외 출장 등 통상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원장이 대행할 자를 지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경영기획본부장(개정 2013.10.29)
2. 기술기반본부장(개정 2013.10.29)
3. 기업지원본부장(개정 2013.10.29)
4. 단(센터)장 중 연장자 순(개정 2013.10.29)

**제6조(감사)** ① 감사는 진흥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한다.

② 진흥원의 이익이 원장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.

③ 감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장은 진흥원 내부에 감사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.

**제7조(부원장)** ① 부원장은 원장이 수행하는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, 경영기획본부장이 부원장직을 겸직한다.(개정 2013.10.29)

② 부원장의 직무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8조(주요조직)** ① 진흥원의 주요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영기획본부(개정 2013.10.1)
2. 기술기반본부(개정 2013.10.1)
  - 1) 산학협력단(개정 2013.10.1)
  - 2) 소재부품단(개정 2013.10.1)
  - 3) 국제기술협력단(개정 2013.10.1)
3. 기업지원본부(개정 2013.10.1)
  - 1) 기술사업화단(개정 2013.10.1)
  - 2) 지역산업단(개정 2013.10.1)
  - 3) 중견기업지원단(개정 2013.10.1)

4. 산업기술정책센터(신설 2013.10.1)

② 진흥원의 주요조직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**제9조(조직의 개폐)** ① 진흥원의 주요조직의 설치, 변경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.

② 하부조직의 설치, 변경 및 폐지는 원장이 한다.

③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한시적인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해외사무소 등)** ① 원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외사무소 및 국내 지역사무소를 설치, 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다.

② 해외 및 국내 지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1조(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·운영)** ① 원장은 진흥원의 경영 효율화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3장 구성원 등

**제12조(구성원)** ① 진흥원은 상근임원과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원장은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직을 둘 수 있다.

③ 직원의 직급 및 직명은 <별표 2>와 같다.

**제13조(정원)** ① 진흥원의 정원은 <별표 3>과 같다.

② 주요조직별 정원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4조(부서장)** ①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## 직제규정

② 부서장의 유고시에는 소관부서의 소속직원 중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원장이 대행할 자를 지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주요조직의 부서장 및 그 하부조직의 장의 보임기준은 <별표 4>와 같다.

**제15조(직무분장)** ① 모든 직위의 직무는 조직계통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주요조직 및 하부조직의 직무분장은 규칙에 의해 구분되며 원장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.

**제16조(직무권한 위임)** 진흥원 각 직위에 대한 직무권한 위임전결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.

**제17조(규칙의 제정)** 원장은 진흥원의 직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 제4장 부설기관

**제18조(부설기관의 설치)** ① 진흥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부 칙(2009. 5. 29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0. 4. 30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1. 1. 27)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1. 2. 24)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1. 11. 24)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2. 2. 28)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3. 2. 27)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3. 8. 30)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3. 10. 1)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3. 10. 29)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직제규정

**부 칙(2014. 2. 28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4. 5. 22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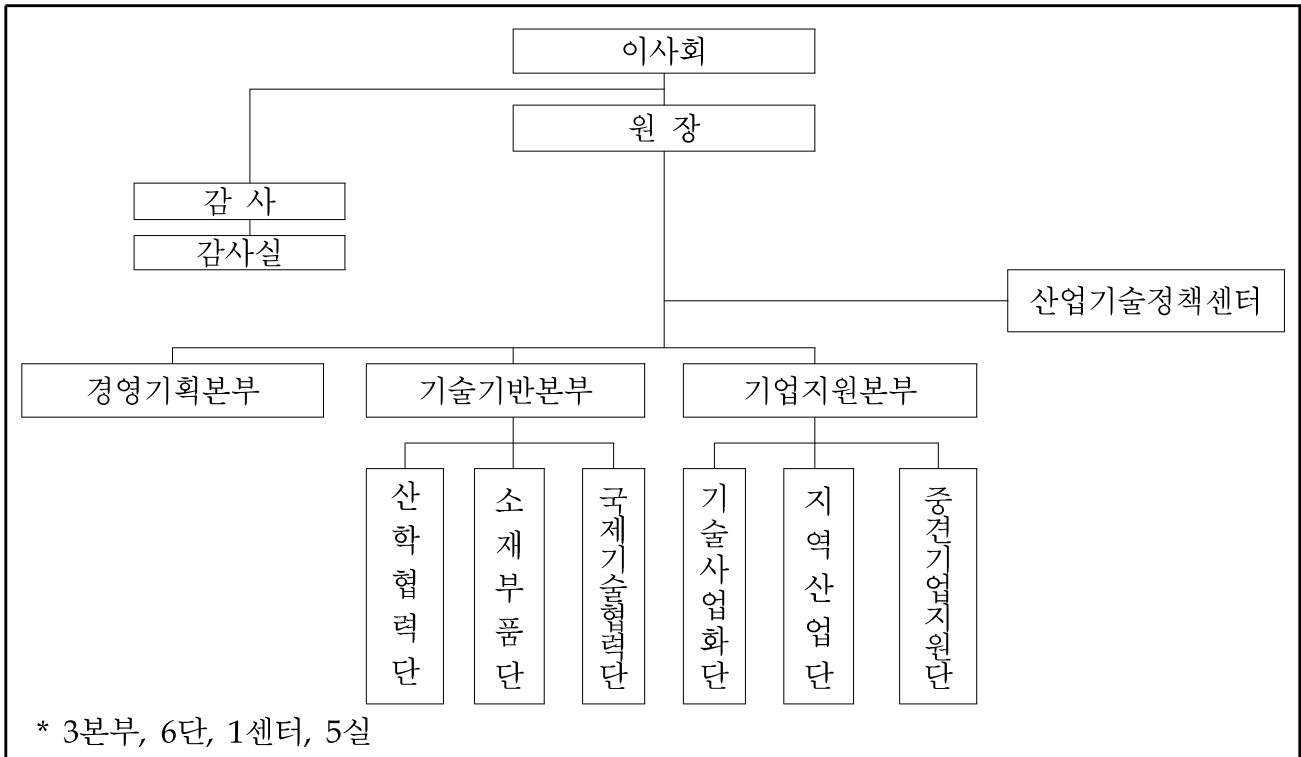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5. 1. 30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(개정 2013.10.1)

### 조직도



<별표2>

### 직급 및 직명체계

직 급	직 명
1 급	수석연구원
2 급	책임연구원
3 급	선임연구원
4 급	연구원
5 급	연구조원

<별표 3> (개정 2014.2.28, 2014.5.22, 2015.1.30)

### 정 원

(단위 : 명)

구분	임원	직원	계
정원	1	263	264

직제규정

<별표 4> (개정 2013.10.29)

### 직위별 보임기준

구 분	직 위	보직 직급
주요조직	본부장	2급 이상
	단(센터) 장	2급 이상
감사실	실 장	3급 이상
하부조직	팀(실) 장	3급 이상